

이용자 부담의 개편에 대해 (2015년 8월부터)

2015년 8월부터 보험료 인상을 가능한한 억제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,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10%로 동결시키고 있는 이용자 부담에 있어서 부담 능력이 있는 일정 이상 소득자의 본인부담이 20%가 됩니다.

요지원 · 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부담 비율 (10% 또는 20%)을 기재한 「개호보험부담 비율증」을 송부하겠습니다.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 서비스 제공 사업소에 제시해 주십시오.

이용자 부담 비율			
요지원 · 제1호 요개호 피보험자 인정을 받고	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60만엔 이상	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20%
		동일세대의 제1호 피보험자 연금수입 + 기타 합계 소득금액이	단신 세대는 280만엔 미만 10%
		2인 이상은 346만엔 미만	10%
	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60만엔 미만		10%

*요지원 · 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분은 일률적으로 10% 부담이 됩니다.

*「기타 합계 소득금액」이란, 합계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적연금 등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입니다.

*각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비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나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가요금 등이 발생하므로, 계약 시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케어플랜 작성

케어플랜 작성 이외에,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. (전액 보험처리)

(1개월당. 요개호 1~5는 케어매니저의 취급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)

내 용	서비스비용(100%)	이용자 부담(0%)
요지원1·2	4,781엔	0엔
요개호1·2	11,587엔	0엔
요개호3~5	15,045엔	0엔
초회 가산	3,336엔	0엔

예를 들어 이런 경우

인정을 받았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

